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7일, 박용갑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9. 24.) 상정·검토보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9. 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9. 30.)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용갑의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라도 눈 깜짝할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확인시키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임.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인격적 살해를 당하게 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혹시 주변 사람이 볼까 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

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44조의7·제7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딥페이크 정보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정보 유통자의 의도나 정보의 용도와 무관하게 딥페이크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딥페이크 정보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처벌하고자 하는 법익 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